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박충권 • 권영진 • 유상범

김승수 · 김선교 · 김위상

권성동 • 김성원 • 고동진

조지연 · 김소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,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, 앱 마켓,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이에 따라,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, 앱 마켓,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 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, 결제방식, 모바일콘텐츠 등 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),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,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(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).

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·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,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 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12호, 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9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앱 마켓, 결제방식,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평가(이하 "보안성 평가"라 한다)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성 평가에 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이용경로, 이용방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 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기통 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0조제1항 중 "제11호"를 "제13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(이하 "운영체제"라 한다)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아의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13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, 자동차 등 여러 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체제별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	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
및 실태조사)	및 실태조사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
	조성을 위하여 앱 마켓, 결제방
	식,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
	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평가(이
	하 "보안성 평가"라 한다)하고
	이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
	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보안
	성 평가에 관하여는 미리 금융
	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
	하여 모바일콘텐츠 이용경로,
	이용방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
	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
	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
	<u>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4항에 따른 앱 마켓사업의

<신 설>

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 업자(제9호부터 <u>제11호</u>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금지 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11. (생 략) <신 설>

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
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
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
<u>구성된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</u>
<u>여야 한다.</u>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
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
고시한다.
제50조(금지행위) ①
<u>সা13ই</u>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
단말장치 등의 제어를 위한

소프트웨어(이하 "운영체제"

<신 설>

② • ③ (생 략)

라 한다)를 제작 또는 공급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 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 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 하지 아니하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·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
13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, 자동차 등 여러 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운영체 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 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 영체제별로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

②·③ (현행과 같음)